

#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

“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액화석유가스  
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지  
난 8월1일 공포되었다.  
이중 본협회 회원사와 관련된 중요부분만  
발췌하여 개정전과 비교 게재하기로 한다.

”

| 개 정 전   | 개 정 후   |
|---|---|
| 제10조(시공관리자)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자격자(이하 “시공관리자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와 같다 (개정 91. 11. 9.).   | 제10조 본문중 “법 제15조 제3항”을 “법 제15조 제4항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 및 제3호중 “1억원”을 각각 “2억원”으로 한다. |
| 1. 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 이상 ·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고압가스 화학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다.  |   |
| 2. 삭제 (91.11.9)   |   |
| 3. 가스설비시공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가스기사 2급 이상 · 고압가스기계기능사 2급이상 · 고압가스화학 기능사 2급이상 또는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. 다만,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는 고압가스 취급 기능사 2급 이상 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. |   |